

#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일자 : 2005년11월 일

발 의 자 : 이현영 의원 외

## 1.제정이유

- 우리 군에서는 건축신고 무료설계반을 운영하여 어려운 농촌 농민의 건축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었으나, 2005년 5월 26일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되면서 건축신고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이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변경되어,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무료설계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 2.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인주택을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으로 정하고,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정함(안 제2조)
- 무료설계는 대장 기재신청 대상 건축물로 정하였음(안제3조)
- 군수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무료설계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설계비 지원대상은 마을공동이용시설물과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농업인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며(안 제6조)
- 지원방법은 설계사무소와 군수 간에 단가계약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함(안 제7조)

## 3.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 거창군조례 제 호

# 거창군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하는 농업인주택과 마을공동이용 시설물(경로당, 마을회관 등) 건축 시 소요되는 설계비용 지원 및 무료설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주택”이라 함은 「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가주택을 말한다.
2.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이라 함은 마을경로당, 마을회관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무료설계대상)** 이 조례에서 무료설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9조 건축물의 설계에서 정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중 농업인 주택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무료설계반 편성 및 운영)** 군수는 건축사의 설계를 요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무료설계를 위해 건축직, 토목직, 환경직 등 기술직으로 구성된 무료설계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①건축주는 무료설계대상 건축물을 건축코자 할 경우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같음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한 후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복합으로 인허가 처리되어야 할 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완공되면 대장기재 신청을 위한 현황도면 등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등재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비 지원)** 건축에 따른 설계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마을 공동이용 시설물
2. 건축법 제9조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중 농업인 주택

**제7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의한 지원대상 건축물에 대한 설계비용을 설계 후 건축신고를 대행한 건축사 사무소에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는 1항의 설계비용을 건축사 사무소와 매년 1월에 단가 계약을 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